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19

발의연월일: 2024. 10. 4.

발 의 자:양부남・이기헌・이건태

박민규 • 이용선 • 정진욱

허성무 • 박지원 • 박홍배

박해철 • 권향엽 • 강준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마약류의 사용, 제조 등에 대한 정보의 유통이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였더라도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하는 등의 유통방지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및 매매의 알선 등과 관련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신고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해당정보의 삭제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한 경우 과징금, 등록의 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마약거래를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5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 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5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
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	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	
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	
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	
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	
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	
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	
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

	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	
	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